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74
----------	-------

발의년월일 : 2019. 5. .
발 의 자 : 정종길 의원 등 11명

개정이유

- 출산장려지원으로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출산지원금을 완화하여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에 따르도록 정함. (안 제22조)

개정조례안 : 복임1

신·구조문대비표 : 복임2

관계법령발췌서 : 복임3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 현행조례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복임4(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기타 참고사항 : 복임5(부서 검토의견)

【붙임 1】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축하금, 양육비(입양수당을 포함한다),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	시의원	정종길 의원 대표발의 (행정3571)
안		
자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축하금, 양육비(입양 수당을 포함한다),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중복지원 금지) ----- ----- ----- ----- 다만,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8-174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24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 수정이유

- 지급 대상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시기와 맞추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
(안 부칙 제2조)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

제2조(지원에 관한 소급 적용)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같음) 제2조(지원에 관한 소급 적용) 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한다.